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6. 13 선고 2023가단1082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6. 1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11. 4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. 12. 8. 접수 제159169호로 경료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장민경

부동산의 표시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1.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2층 호

-건물번호

철근콘크리트조 평층라브지붕

-대지권의 표시 229.1 분의 28.63

위 부동산 중 피고 지분 13분의 2

청 구 원 인

1. 신청 외 C와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

가. 신청인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'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'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, 신청 외 C는 신청인 회사에서 양수한 채권의 채무자입니다.

나. 신청인 회사는 신청 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73907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1. 금 17266,096원 2. 위 1항 금원 중 22,772,173원에 대하여 2011년 11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. 독촉절차 비용 14,100원 (내역 송달료 13,000원 인지액 1,100원) 을 청구 취지로 하는 지급명령이 2014년 1월 27일 송달되어 2014년 2월 11일에 확정되었습니다.

(소갑제1호증 지급명령 정본)

2. 소외 채무자와 피고 간의 사해행위

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신청 외 망 D의 사망에 따라 직계비속 상속인인 이사건의 피고와 신청 외 C는 2022. 11. 04. 동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. 12. 08.접수 제159169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.

C는 원고 회사의 채무자로 현재 동 채무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, 자신의 책임 재산인 동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C는 원고 회사로부터 채권확보 및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어떠한 실제적 원인 없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것인 바, 소외 C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자신의 책임재산인 동 부동산의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, 피고와 소외 C는 남매관계로써, 소외 C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입니다.

3. 결어

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C 과 피고사이의 2022. 11. 04.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명백하므로 취소를 구하며, 그 지분은 차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하기로 하고 피고는 소외 C 지분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본소에 이르렀습니다.

